



목 포 시

시 보



시보는 공문서의
효력을 갖는다.

제1475호 2020. 12. 28.(월)

공 고

○ 목포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----- 2

회람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목포시 편집 : 공보과 ☎ 061-270-8539

목포시 고시 제 2020 - 330호

「목포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」제정안 입법예고

「목포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0년 12월 28일

목 포 시 장

1. 제정이유

-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 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교육교재 등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교육실시 방법 및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(안 제7조, 제8조)
- 교육통지 및 교육이수자 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9조, 제10조)
- 교육불참자 통지 및 교육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, 제12조)

3. 관련법규

-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
-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-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
4. 관련부서 의견

- 부패영향평가 : 해당없음
- 성별영향 분석평가 : 해당없음
- 규제심사(심의) 대상여부 : 해당없음

5. 입법예고 기간 : 2020. 12. 28. ~ 2021. 1. 18.(21일간)

6. 의견제출

이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1. 1. 18.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(참조 : 보건위생과장)에게 전화,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
다.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

라. 제출서식

조례안 내용	의견	비고

※ 의견제출 및 문의처 : 목포시 보건위생과 (목포시 원산로45번길 5)
전화 061)270-3324, FAX 061)270-3597, E-mail leehsl@korea.kr

목포시 조례 제 호

목포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교육”이란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.
2. “노래연습장업”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.

제3조(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)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을 신규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
2.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
3.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

④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.

⑤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.

제4조(교육의 위탁) 목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5조(교육계획의 수립) ① 시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매년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.

1.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
2. 교육일시 및 장소
3. 교육내용 및 방법
4.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
5. 교육비 징수에 관한 사항
6. 교육비 수입·지출 계획서
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② 수탁자는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매년말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며, 매 교육시마다 교육 시행일 15일전까지 교육일시 및 장소, 교육내용, 예상참석인원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6조(교육교재 등)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.

1.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
2. 위생교육(친절·질서·청결 등에 관한 사항 포함)
3.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

③ 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,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한다.

제7조(교육실시 방법) ① 정기교육은 반기별로 하고,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등록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.

제8조(교육비용) ① 수탁자는 교육대상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수납할 수 있다.

② 수탁자는 지급기준을 정하여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수강료 및 제2항의 강사료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해당연도 교육계획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.

④ 수탁자는 교육비용에 관한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, 집행잔액은 자체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제9조(교육통지) 시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전 까지 교육일시·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0조(교육이수자 관리)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
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·비치하고,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제11조(교육불참자 통지)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하여야 한다.

제12조(교육결과 보고)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